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26. 2. 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개정 및 동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일부 개정규정(※)의 '26. 8. 6. 시행으로, 법률 위임 등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과거사정리법 제18조, 제27조, 제39조, 제44조 및 제63조제4항

2. 주요내용

가. 법 제18조 제4항 위임에 따라, 숙의공론화장 구성방법·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신설, 안 제3조)

나. 법 제27조 제8항의 위임에 따라, 유해발굴 전담부서 설치·운영, 유해조사·발굴 및 손실보상 절차 등 규정(신설, 안 제13조 ~ 제19조)

다. 법 제39조의 위임에 따라, 결정의 공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신설, 안 제12조)

라. 기타

- 법 제23조 관련, 진실규명신청 안내절차 강화(신설, 안 제4조제7항 및 제8항)
- 피해자 등의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 피해자 등의 권리 구체화(신설, 안 제8조)

- 결정통지 기산점 명확화(일부개정, 안 제11조제1항)
- 직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유 관련 교육훈련 실시(신설, 안 제21조제2항)
- 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관련, 협력대상에 '재외공관' 추가(안 제26조)
- 법 제4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구체화(신설, 안 제29조)
- 법 제61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특례) 관련 안내 및 홍보(신설, 안 제3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
- 라. 기 타 : 해당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조를 제25조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하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제6조를 제2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14조를 제24조로 한다.

제15조를 제23조로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종전의 제6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22조제1항**”을 각각 “**법 제22조 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제8조 및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숙의공론화장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숙의공론화장은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4명 이내의 공론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참여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추천된 공론위원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 ④ 숙의공론화장은 회의를 통하여 수렴 및 합의된 의견이나 권고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전달받은 의견 또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반영 계획 또는 반영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 등을 포함한 검토 결과를 60일 이내에 숙의공론화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숙의공론화장은 의견수렴 및 숙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숙의공론화장의 요청에 협조한다.
- ⑦ 그 밖에 숙의공론화장의 구성, 추천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피해자 등의 의견 제출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피해자 등의 사망·소재불명 또는 진술 거부 등으로 인하여 의견 청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진실 규명에 관한 사항

2. 피해 및 명예 회복, 추모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장애·고령·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견 제출이나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 등에 대하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2조 (결정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9조 본문에 따라 결정을 공개할 때에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결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결정의 종류 및 사건의 명칭

2. 결정의 내용

3. 진실규명에 따른 권고 사항(진실규명결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위원회는 공개된 결정 내용 중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비식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본인 또는 유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결정의 공개절차,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유해발굴 전담부서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유해 조사·발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둔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해 조사 및 발굴
2. 신원확인 및 감식 지원
3. 유족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4조(유해 조사·발굴)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유해 조사

· 발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발굴 목적 및 대상 지역
2. 조사·발굴 시기, 방법 및 소요 기간
3. 조사·발굴 대상 지역에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한 근거
4. 조사·발굴 대상 지역에 대한 탐문 계획
5. 조사·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
6. 조사·발굴에 관한 예산 마련 계획
7. 조사·발굴의 위탁에 관한 계획

②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조사·발굴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유해 조사·발굴 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공유수면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유해의 조사·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소유자 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 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홈

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유해조사·발굴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대학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토지등의 출입 및 일시 사용 절차)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위원회 직원등(제22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공무원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신분증 및 조사·발굴 결정서 등)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위원회 직원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원할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또는 담장·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제16조(유해 보호조치)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 및 발굴 현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해 발견 현장에 안내판 설치
2. 침수·동결·붕괴·유실 등 자연재해나 외부 요인으로부터 현장 상태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시설의 설치 및 주기적인 현장 점검

3. 소유자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실 및 보호 협조 요청 통지

4. 발굴된 유해의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해 안치시설에 인계

② 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의 보호를 위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굴 및 인계된 유해를 유해의 존엄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안치하고 추도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①위원회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및 유전자검사를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및 분석

2. 위원회가 확보한 사건별 진실규명 조사 자료 및 관련 기록 분석

3. 지역주민, 제보자 및 생존 유가족 등의 증언 비교

4. 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 유전자 검사·비교 등 유전학적 분석

6. 그 밖에 신원확인을 위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분석 방법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조치 및 유전자검사 업무의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학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손실보상 절차) ①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유해의 조사·발굴 및 손실보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 등 지역공동체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유해 조사·발굴 및 보상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발굴 전담 부서의 조직 및 인력 구성, 유해의 조사·발굴 및 보호, 신원확인 및 유전자검사의 세부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종전의 제7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추가로 확인한 경우,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등에게 별도의 신청 접수 절차를 안내한다.

⑧ 위원회는 피해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주요 해외 입양 국가의 언어로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과정에서의 통역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결정통지(이하 “결정통지”라 한다)는 결정이 있는 날”을 “결정통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위원장의 최종 결재일로”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위원회는 진실규명과 화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의 기관과 교류·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위원·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실규명에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고,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속 직원의 심리적 유해 요인을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리상담, 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제26조(중전의 제16조)제1항 중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법 제45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은 법 제45조 제1항”으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제공해야”를 “제공하여야”로, “업무 수행”을 “업무수행”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재외공관과”로, “시·도실무협의회”를 “시·도 및 재외공관과 실무협의회”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장과”를 “장 및 재외공관의 장과”로 하며, 제1호 “신청서의 접수”를 “법 제22조제1항의 진실규명 신청의 접수”로, 제2호 “제7조제6항에 따른 ~ 등의 홍보”를 “법 제22조제1항의 ~ 에 관한 홍보”로, 제3호 “기초사실의 조사”를 “기초사실 및 피해생존인의 인권실태 조사”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로,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와”를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과”로,

“관계지방자치단체”를 “관계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으로 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등) ① 국가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인권실태 및 피해회복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피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내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에 관한 특례에 따른 후속조치) 국가는 법 제61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일반국민과 진실규명 사건 관련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하되, 구체적인 홍보의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과거사정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 (생략) <u><신설></u>	제25조 (현행 제2조와 같음) 제3조(숙의공론화장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숙의공론화장은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4명 이내의 공론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참여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추천된 공론위원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④ 숙의공론화장은 회의를 통하여 수렴 및 합의된 의견이나 권고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전달받은 의견 또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반영 계획 또는 반영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 등을 포함한 검토 결과를 60일 이내에 숙의공론화장에 통보하

제3조 (생 략)

제4조(교육훈련 등) 위원회는 진실규명과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의 기관과 교류·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위원·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실규명과 화해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숙의공론화장은 의견수렴 및 숙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숙의공론화장의 요청에 협조한다.

⑦ 그 밖에 숙의공론화장의 구성, 추천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21조(교육훈련 등) ①위원회는 진실규명과 화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의 기관과 교류·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위원·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실규명에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고,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속 직원의 심리적 유

제5조 (생 략)

제6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 제777조에 따라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과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① ~ ⑥ (생 략)

<신 설>

해 요인을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리상담, 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제22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2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

-----.

② 법 제22조 제1항-----

-----.

-----.

제4조(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추가로 확인한 경우,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신 설>

<신 설>

바에 따라 신청인 등에게 별도의 신청 접수 절차를 안내한다.

⑧ 위원회는 피해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주요 해외 입양 국가의 언어로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과정에서의 통역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결정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9조 본문에 따라 결정을 공개할 때에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결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결정의 종류 및 사건의 명칭
2. 결정의 내용
3. 진실규명에 따른 권고 사항(진실규명결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위원회는 공개된 결정 내용 중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비식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본인 또는 유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제11조 · 제12조 (생략)

<신설>

하다.

④ 결정의 공개절차,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 제10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제8조(피해자 등의 의견 제출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피해자 등의 사망·소재불명 또는 진술 거부 등으로 인하여 의견 청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진실 규명에 관한 사항
2. 피해 및 명예 회복, 추모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장애·고령·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견 제출이나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 등에 대하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제8조 ~ 제10조 (생략)

<신설>

<신설>

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5조 ~ 제7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제13조(유해발굴 전담부서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유해 조사·발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둔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해 조사 및 발굴
2. 신원확인 및 감식 지원
3. 유족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4조(유해 조사·발굴) ① 위원회
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유해 조
사·발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발굴 목적 및 대상 지역
2. 조사·발굴 시기, 방법 및 소요
기간
3. 조사·발굴 대상 지역에 희생
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한 근거
4. 조사·발굴 대상 지역에 대한
탐문 계획

<신 설>

5. 조사·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

6. 조사·발굴에 관한 예산 마련 계획

7. 조사·발굴의 위탁에 관한 계획

②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조사·발굴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유해 조사·발굴 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공유수면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유해의 조사·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소유자 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 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유해조사·발굴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대학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토지등의 출입 및 일시 사용 절차)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타

<신 설>

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위원회 직원등(제22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공무원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신분증 및 조사·발굴 결정서 등)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 직원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또는 담장·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제16조(유해 보호조치) ①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 및 발굴 현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해 발견 현장에 안내판 설치
2. 침수·동결·붕괴·유실 등 자연재해나 외부 요인으로부터 현장

<신 설>

상태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시설의 설치 및 주기적인
현장 점검

3. 소유자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
실 및 보호 협조 요청 통지

4. 발굴된 유해의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해 안치시설에 인계

② 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제1항의 보호를 위하여 협력
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라 발굴 및 인계된 유해를
유해의 존엄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안치하고 추도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 (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①위원회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및 유전자검
사를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
조 및 분석

2. 위원회가 확보한 사건별 진실
규명 조사 자료 및 관련 기록

<신 설>

분석

3. 지역주민, 제보자 및 생존 유가

족 등의 증언 비교

4. 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 유전자 검사·비교 등 유전학적 분석

6. 그 밖에 신원확인을 위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분석 방법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 조치 및 유전자검사 업무의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학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손실보상 절차) ①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유해의 조사·발굴 및 손실보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 등 지역공동체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이하 “결정통지”라 한다)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③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장소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유해 조사·발굴 및 보상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발굴 전담 부서의 조직 및 인력 구성, 유해의 조사·발굴 및 보호, 신원확인 및 유전자검사의 세부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 결정통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위원장의 최종 결재일로-----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23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은 법 제45조 제1항-----
----- 경우에는 -----
----- 제공하여야 ----- 업무 수행-----
-----.

② 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의 협조를 위하여 시·도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신청서의 접수

2. 제7조제6항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의 홍보

3. 기초사실의 조사

④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처리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제18조 (생략)

② ----- 특별시·광역시 및 도·재외공관과-----

----- 시·도 및 재외공관과 실무협의회-----.

③ -----

-- 장 및 재외공관의 장과 -----.

1. 법 제22조제1항의 진실규명 신청의 접수

2. 법 제22조제1항의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홍보

3. 기초사실 및 피해생존인의 인권실태 조사

④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의 의견-----

⑤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제28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

<신 설>

제2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등) ① 국가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인권실태 및 피해회복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피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내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에 관한 특례에 따른 후속조치) 국가는 법 제61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일반국민과 진실규명 사건 관련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하되, 구체적인 홍보의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 제21조 (생 략)

제31조 ~ 제33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제22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3개월까지 존속한다.

<삭 제>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전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 제777조에 따라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 제1항에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과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숙의공론화장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숙의공론화장은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4명 이내의 공론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참여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추천된 공론위원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④ 숙의공론화장은 회의를 통하여 수렴 및 합의된 의견이나 권고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전달받은 의견 또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반영 계획 또는 반영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 등을 포함한 검토 결과를 60일 이내에 숙의공론화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숙의공론화장은 의견수렴 및 숙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숙의공론화장의 요청에 협조한다.

⑦ 그 밖에 숙의공론화장의 구성, 추천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진실규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로 진실규명을 신

청하는 경우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이하 “각하결정”이라 한다)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이하 “조사개시결정”이라 한다) 이전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의 편의를 위해 신문·방송·정보통신망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의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추가로 확인한 경우,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등에게 별도의 신청 접수 절차를 안내한다.

⑧ 위원회는 피해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주요 해외 입양 국가의 언어로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과정에서의 통역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위원회는 신청서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 위원회는 위원회에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하결정 또는 조사개시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전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재신청) ① 위원회는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② 재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8조(피해자 등의 의견 제출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피해자 등의 사망·소재불명 또는 진술 거부 등으로 인하여 의견 청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진실 규명에 관한 사항

2. 피해 및 명예 회복, 추모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장애·고령·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견 제출이나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 등에 대하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9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이하 “실지조사”라 한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른 기관·시설 및 단체에 그 일시·장소·목적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⑤ 위원회는 법 제25조에 따른 진실규명 조사(이하 “진실규명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진실규명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 관련 증거 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당 국가 또는 관련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실지조사 과정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7조에 따라 개장 등 필요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진술의 녹음 등)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대

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동의를 받아 진술 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 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위원장의 최종 결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결정통지를 받은 연월일
3. 결정통지된 사항 또는 결정의 내용
4. 이의신청 이유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보완할 사항
2. 보완을 요청하는 이유
3. 보완기간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결정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9조 본문에 따라

결정을 공개할 때에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결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결정의 종류 및 사건의 명칭

2. 결정의 내용

3. 진실규명에 따른 권고 사항(진실규명결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위원회는 공개된 결정 내용 중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비식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본인 또는 유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결정의 공개절차,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유해발굴 전담부서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유

해 조사·발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둔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해 조사 및 발굴

2. 신원확인 및 감식 지원

3. 유족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4조(유해 조사·발굴)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유해 조사

·발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발굴 목적 및 대상 지역

2. 조사·발굴 시기, 방법 및 소요 기간

3. 조사·발굴 대상 지역에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한 근거

4. 조사·발굴 대상 지역에 대한 탐문 계획

5. 조사·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

6. 조사·발굴에 관한 예산 마련 계획

7. 조사·발굴의 위탁에 관한 계획

②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조사·발굴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유해 조사·발굴 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공유수면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유해의 조사·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소유자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 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유해조사·발굴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대학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토지등의 출입 및 일시 사용 절차)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위원회 직원등(제22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공무원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신분증 및 조사·발굴 결정서 등)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위원회 직원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또는 담장·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제16조(유해 보호조치)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 및 발굴 현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해 발견 현장에 안내판 설치
 2. 침수·동결·붕괴·유실 등 자연재해나 외부 요인으로부터 현장 상태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시설의 설치 및 주기적인 현장 점검
 3. 소유자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실 및 보호 협조 요청 통지
 4. 발굴된 유해의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해 안치시설에 인계
- ② 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의 보호를 위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굴 및 인계된 유해를 유해의 존엄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안치하고 추도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 (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조치 및 유전자검사를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및 분석
 2. 위원회가 확보한 사건별 진실규명 조사 자료 및 관련 기록 분석
 3. 지역주민, 제보자 및 생존 유가족 등의 증언 비교
 4. 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 유전자 검사·비교 등 유전학적 분석
 6. 그 밖에 신원확인을 위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분석 방법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조치 및 유전자검사 업무의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학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손실보상 절차) ①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유해의 조사·발굴 및 손실보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 등 지역공동체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유해 조사·발굴 및 보상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발굴 전담 부서의 조직 및 인력 구성, 유해의 조사·발굴 및 보호, 신원확인 및 유전자검사의 세부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전문위원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제21조(교육훈련 등) ①위원회는 진실규명과 화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의 기관과 교류·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위원·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실규명에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고,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속 직원의 심리적 유해 요인을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리상담, 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기구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감정인, 참고인,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23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나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이 다른 사람

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4조(공무원의 파견 협의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 파견근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25조(공무원의 정원) 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교육부,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은 통일부, 8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2명, 검찰주사 또는 수사주사 3명, 검찰주사보 2명)은 법무부, 8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은 국방부, 15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5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 또는 보건주사 1명)은 보

건복지부, 2명(행정주사 2명)은 고용노동부, 1명(행정주사 1명)은 성평등 가족부, 2명(수사사무관 또는 정보사무관 1명, 수사주사 또는 정보주사 1명)은 국가정보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인사혁신처,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 7명(경정 2명, 경감 1명, 경위 3명, 경사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 별도 개정 추진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에는 장소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재외공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시·도 및 재외공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외공관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1항의 진실규명 신청의 접수
2. 법 제22조제1항의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홍보
3. 기초사실 및 피해생존인의 인권실태 조사

④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처리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업무의 공동수행) 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진실규명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학술·연구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진실규명 활동의 협의·조정) 위원회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특별기구를 설치한 국가기관 및 해당 특별기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특별기구가 조사 중인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또는 특별기구가 조사한 사건 또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추가조사 또는 검증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5. 관련 자료의 요청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7. 진실규명에 따른 피해보상과 명예회복 등 화해를 위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2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등) ① 국가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인권실태 및 피해회복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내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에 관한 특례에 따른 후속조치)

국가는 법 제61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일반국민과 진실규명 사건 관련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하되, 구체적인 홍보의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른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과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3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별도 개정추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총계	137
정무직 계	4
위원장(장관급)	1
상임위원(차관급)	3
별정직 계	75
4급상당	7
5급상당	19
6급상당	38
7급상당	11
일반직 계	5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검찰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정보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15
검찰주사·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 시설주사·전산주사·정보주사·수사주사·편사연구사 또는 기록연 구사	20
검찰주사보·행정주사보·수사주사보 또는 기록연구사	7
특정직 계	7
경정	2
경감	1
경위	3
경사	1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위원회의 업무나 명예에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다)을 한 참고	법 제66조 제1항제1호	1,500	2,250	3,000

인이나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또는 물건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나.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 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2호	1,500	2,250	3,000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6조제4 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기 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1호	500	750	1,000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6조제8 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 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3호	1,500	2,250	3,000
마.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 우	법 제66조 제2항제2호	500	750	1,000
바.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진 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3호	500	750	1,000
사.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4호	500	750	1,000
아. 법 제59조를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5호	400	600	900

〈 의안 소관 부서명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	
연 락 처	(02) 3393 - 9749